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송언석
김미애 · 이상휘 · 김용태
강명구 · 김승수 · 김태규
이양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의 휴가·외출·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,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군인의 휴가·외출·외박을 보장하되,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·외출·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·외출·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휴가 등의 보장)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·외출·외박을 보장 받는다. <후단 신설>	제18조(휴가 등의 보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. 이 경우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·외출·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